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23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170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741,440,220원, 지방교육세 104,231,730원 중 재산세 652,553,300원, 지방교육세 91,063,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문상배

 판사 반병동